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75~475p 12번 문제 ㉔번 선지 해설 번호 : 12	해설	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48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(경비업법 제18조 제2항).	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하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(경비업법 제18조 제2항). ※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5항)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